

김해 진영2지구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당 아파트는 2015.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은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입니다.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단,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60%는 추첨제로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 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전역,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6.07.0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예 의거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jy2-sclass.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96조)
 -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금지)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제39조, 제41조의2, 제9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또는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불법전매 금지)분양권과 관련하여 불법 분양권 거래 및 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제39조, 제41조의2, 제96조"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07.)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3순위' → '1,2순위'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무주택세대주' → 변경'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에 1명만 신청가능)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 변경 시 청약제한(규모 변경 후 3개월) 기간 폐지 → 즉시 변경 및 청약가능 / 기납입한 예치금액 이하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청약 허용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 21707호(2016.06.1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90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06,791.8㎡ (아파트: 102,562.4㎡, 근린생활시설: 4,229.4㎡)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9층 19개동, 총 1,5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125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5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2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 전용 면적 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민영주택		79.9609	79	79.9609	24.7003	104.6612	4.7900	43.1409	152.5921	61.68	200	10
		84.9538A	84A	84.9538	26.1333	111.0871	5.0890	45.8348	162.0109	65.54	693	32
		84.7740B	84B	84.7740	26.0201	110.7941	5.0783	45.7378	161.6102	65.40	364	16
		99.6863	99	99.6863	29.3456	129.0319	5.9716	53.7833	188.7868	76.90	180	10
		110.4304	110	110.4304	32.8378	143.2682	6.6153	59.5800	209.4635	85.19	84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타입	공급 세대 수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6.08.0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	(10%)	(10%)	(10%)	(10%)	(10%)	
79.9609	115동 116동 118동	79	200	2층~4층	30	56,042	178,458	234,500	11,725	11,725	23,450	23,450	23,450	23,450	23,450	23,450	70,350
				5층~7층	30	56,042	185,458	241,500	12,075	12,075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72,450
				기준층	140	56,042	192,958	249,000	12,450	12,450	24,900	24,900	24,900	24,900	24,900	24,900	74,700
84.9538 A	102~106동 (1,5호) 107동, 108동(전체) 109동(1,5호) 110동,113동 (전체) 114동(1,5호) 117동(1,5호)	84A	693	2층~4층	96	59,541	190,859	250,400	12,520	12,520	25,040	25,040	25,040	25,040	25,040	25,040	75,120
				5층~7층	96	59,541	197,859	257,400	12,870	12,870	25,740	25,740	25,740	25,740	25,740	77,220	
				기준층	501	59,541	205,459	265,000	13,250	13,250	26,500	26,500	26,500	26,500	26,500	79,500	
84.7740 B	102~106동 (2,3호) 109동(2,3호) 114동(2,3호) 117동(2,3호)	84B	364	2층~4층	48	59,415	190,985	250,400	12,520	12,520	25,040	25,040	25,040	25,040	25,040	25,040	75,120
				5층~7층	48	59,415	198,085	257,500	12,875	12,875	25,750	25,750	25,750	25,750	25,750	77,250	
				기준층	268	59,415	205,585	265,000	13,250	13,250	26,500	26,500	26,500	26,500	26,500	79,500	
99.6863	111동 112동 119동	99	180	2층~4층	30	69,867	218,433	288,300	14,415	14,415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28,830	86,490
				5층~7층	30	69,867	226,433	296,300	14,815	14,815	29,630	29,630	29,630	29,630	29,630	88,890	
				기준층	120	69,867	235,133	305,000	15,250	15,25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91,500	
110.4304	101동	110	84	2층~4층	9	77,397	233,603	311,000	15,550	15,55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93,300	
				5층~7층	9	77,397	241,903	319,300	15,965	15,965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95,790	
				기준층	66	77,397	251,603	329,000	16,450	16,450	32,900	32,900	32,900	32,900	32,900	98,7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 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p>■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p>■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p>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특별공급 신청자(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금액이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총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 개정(2015.12.29)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김해시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주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주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순으로 주첨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 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동호추첨 : 특별공급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 결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하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m²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계
		79	84A	84B	99	110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20	69	36	-	-	125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0	69	36	18	8	151
	신혼부부특별공급	20	69	36	-	-	12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21	11	5	3	46
	합계	66	228	119	23	11	447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주택건설지역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으신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다자녀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주택건설지역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공급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①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지정 개시일전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신청이 제한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②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단, 관련 규정 변경 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함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5원 이하	6,570,4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X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이상의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बैं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 하나은행(구 외환, 구 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도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는 신청모두를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청약통장으로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09.25)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 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칭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에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규모를 변경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은 변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칭을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할 경우 그 차액의 예치는 주택공급 신청 전에 하여야 한다.
-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김해시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총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 개정(2015.12.29)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 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 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이하 : 가점제(40%),추첨제(60%) 적용 / 85㎡초과 : 추첨제 적용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 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	
	85㎡ 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 상기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용 85㎡이하의 청약가점제(40%), 추첨제(60%) 적용, 85㎡초과는 청약추첨제가 적용됨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존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분	내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분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

•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 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만원	*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1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 하나은행(구 외환, 구 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06.30)** 이후부터 평일(시간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 구비서류(은행창구 접수 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신청 시 서명 으로 한 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2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노부모 신혼부부	• 2016.06.22.(수) 09:00 ~ 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김해 진영2지구 중흥S-클래스견본주택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61-1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016.06.23.(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2you.com)
	2순위	• 2016.06.24.(금) 08:00 ~ 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2you.com)

- ※ 특별공급 공급신청자가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KEB 하나은행(구 외환, 구 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2순위는 청약자거래 은행 본·지점 접수가능)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존청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일시 : 2016.06.22.(수) 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개재	일시 : 2016.06.30.(목)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일시 2016.07.05.(화)~2016.07.07(목) 10:30~17: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일시 : 2016.06.30(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6.06.30 ~ 2016.07.09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제공일시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2016.06.30.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6.1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1조에 따라 당첨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 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최하층의 주택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함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일반공급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

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126-910012-18004	(주)청원개발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19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VI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6.11.05.	입주지정일
79.9609	9,500,000	950,000	1,000,000	7,550,000
84.9538(84A)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84.7740(84B)	11,000,000	1,100,000	1,000,000	8,900,000
99.6863	11,500,000	1,150,000	1,000,000	9,350,000
110.4304	12,500,000	1,250,000	1,000,000	10,25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발코니확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126-910012-18004	(주)청원개발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옵션 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설치 모델명(제조사:LG)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실외기	실내기		계약시	16.11.05.	입주지정일
79.9609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MUQ145 OS25V	거실: LM-Q720TATF 안방: LM-Q320TAUF	3,250,000	400,000	400,000	2,450,000
	옵션2 (4개소)	거실,안방,침실1,2		침실1,2: LM-Q200TAUF	5,500,000	600,000	600,000	4,300,000
84.9538 (84A)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MUQ145 OS25V	거실: LM-Q720TATF 안방: LM-Q320TAUF	3,320,000	400,000	400,000	2,520,000
	옵션2 (4개소)	거실,안방,침실1,2		침실1,2: LM-Q200TAUF	5,520,000	600,000	600,000	4,320,000
84.7740 (84B)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MUQ145 OS25V	거실: LM-Q720TATF 안방: LM-Q320TAUF	3,320,000	400,000	400,000	2,520,000
	옵션2 (4개소)	거실,안방,침실1,2		침실1,2: LM-Q200TAUF	5,520,000	600,000	600,000	4,320,000
99.6863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MUQ145 OS25V	거실: LM-Q720TATF 안방: LM-Q320TAUF	3,420,000	400,000	400,000	2,620,000
	옵션2 (5개소)	거실,안방,침실1,2,3		침실1,2,3: LM-Q200TAUF	6,700,000	600,000	600,000	5,500,000
110.4304	옵션1 (2개소)	거실,안방	MUQ145 OS25V	거실: LM-Q720TATF 안방: LM-Q320TAUF	3,440,000	400,000	400,000	2,640,000
	옵션2 (5개소)	거실,안방,침실1,2,3		침실1,2,3:LM-Q200TAUF	6,740,000	600,000	600,000	5,540,000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시스템에어컨 (계약금, 중도금, 잔금)	126-910012-18004	(주)청원개발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화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및 식당 <타일, 화강석>현관, <강화마루>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바닥 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4)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5)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4구 가스쿡탑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전기,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7) 가구류 및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신발장, 불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일체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m²,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79.9609	84.9538(84A)	84.7740(84B)	99.6863	110.4304
금 액	23,314,000	24,745,000	24,680,000	29,246,000	32,558,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

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 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V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 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 다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의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②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6.17) 전일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를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측벽 상단에 브랜드명, 주거동 호수의 순서로 표기할 수 있으며, 발광조명체는 건설사의 명칭, 로고, 브랜드의 사용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중흥S-클래스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비율은 공동주택 총 대지비율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정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지면적과 용적율,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m ²)	106,791.80m ²	102,562.40m ²	4,229.40m ²	13.26%	164.89%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VIII

단지 여건사항

■ 김해 진영2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김해 진영2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김해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 김해 진영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김해 진영2지구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김해시, 한국토지공사 등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건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북서측에는 23m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벽 등은 시공되지 않음
- 본 사업부지 동측에 보행자도로와 어린이공원 및 공동주택,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서측에는 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시설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서측으로 23m도로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측 35m대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함
- 본 사업부지 남측 35m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준공 전 도로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로변에 방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구간, 위치 및 구조, 형태(높이, 재질, 개구부 등) 등은 그 측정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공되어질 수 있음. 방음벽 설치 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서측 23m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지고 이로 인해 인접한 111,112동 세대는 버스 출발시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서측 23m 도로에 설치되는 버스정류장은 이동 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서측으로 30m 이격하여 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개최되는 각종행사 및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소음, 교통체증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동쪽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에서 진영중앙초등학교로의 통학보행 수단인 육교는 LH에서 시공하는 사업분으로 디자인 및 높이 구조 등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남측경계로부터 약20m 이격하여 김해대로가, 북측으로 국도25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B-2블럭 부지에 공동주택이 시공 중에 있으며 추후 이와 인접한 106,107,115,116동은 사생활권,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부지 북측에 주천강이 위치하고 있음
-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개최되는 각종행사 및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김해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진영중앙초등학교에 본 단지 초등학생수를 수용하기에는 학급수가 부족하여 김해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진영중앙 초등학교 교육시설물 증축 및 무상공급을 위한 협약서' 체결하고, 당사가 직접 시공 준공하여 김해시 교육지원청에 기부함으로써 부족한 학급수를 늘려 본 단지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계약 전 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람
- 당사 아파트 입주민의 초·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진영중앙초등학교 예정, 중학교의 경우 진영12학군(구) 내 배치되거나 학교설립 관련 각종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 및 중학군(구) 변동에 따라 인근 중학군(구)로 배치될 수 있으며 또한 진영지구 내 중·고등학교는 설립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임
- 진영 2지구 내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음
- 신설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학교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 및 각종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경남도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지연,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등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 설치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

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 계획은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색채 및 경관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부출입구를 통하여 근린상가 주변에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공간 형성되어 있으며 추후 근린 생활과 인접한 동에서는 근린생활 주차공간에 대해 소유권등을 주장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수직수평돌출구조물(몰딩)에 접한 세대의 각 실에서의 조망권침해, 일조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직수평돌출구조물의 사이즈는 추후 임의 조정시공 할 수 있으며, 수평몰딩의 경우는 돌출부분에 부딪히는 빗소리 등의 의해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플라스틱 창호 컬러 및 난간대 컬러는 입면 색채계획에 따라 호수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내 모형 및 CG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배치에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 전면에 이격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제연환풍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조경석 및 생울타리 담장이 설치 예정이며(상가 진입부 제외)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부 출입구에 위치한 101동, 111동, 117동, 118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 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휘트니스센터,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하1층에 설치되며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 광이 불리할 수 있음
- 118동 정면 113동 후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105동 후면 108동 정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13동 정면 110동 후면에 설치된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에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110동 정면 102동 후면에 석가산이 설치되며 설치된 석가산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소음, 낙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115동 정면 107동 후면에 보육시설 및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 층세대는 조망 및 사생활권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103동 후면 109동 정면에 주민운동시설, 116동 정면 115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 107동 정면 106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6동,107동,115동,116동 동측으로 B-2블럭 부지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이와 인접한 세대는 B-2블럭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사생활권, 조망권, 일조권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에 의해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권, 일조권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114동 정면 109,108동 후면에는 중앙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3), 116동,117동,118동,119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1,2)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신재생에너지는 지열시스템이 사용될 계획이며 지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은 관리사무소 공유부위 냉난방 에너지 지원으로 일부 사용할 계획이며, 제품 및 설치장소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변경 될 수 있음
- 재활용분리수거장은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가능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

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진출입구에 설치할 가감속 차로에 대하여 기부체납(기부체납면적 331.90㎡) 예정이며, 도로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할 예정임.

I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1.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2.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3.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위치는 정면 안방 앞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음
 4.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 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5.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화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6.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7.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9.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10. 79,84,99,110 침실1,2의 벽체는 골조벽체가 아닌 건식고정(THK150) 벽체임
 11.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2.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3.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14.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15.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6.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7.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천장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18. 본 공사 시 신발장 내부에 분전함, 통신단자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주방팬트리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19.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20.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1.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되어 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실시공사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될 수 있음
 4.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됨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 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음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9.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10. 아파트 전면 돌출부분은 특화 디자인 계획과 세대의 조망권·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그 돌출정도가 변경될 수 있음
11. 아파트 저층부마감재는 화강석재 와 스톤코트가 혼재되어 시공되어지며, 몰딩은 EPS몰딩으로 시공되어짐

■ 주변환경

1. 진영B-1블럭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진영B-1블럭내 학교 건립 주체는 경남도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마이너스옵션)

1.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외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세대내 사용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불가하다는 사실,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2.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 하지 않음
3.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
4.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고지사항

1.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 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3.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 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4.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7.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8.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10.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1.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13.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6.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은 지상에 설치되며, 그 외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등)은 지하층에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1개소, 경비실2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주민운동시설3개소, 보육시설1개소, 근린생활시설3개소, 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센터1개소, 골프연습장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호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내 현관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 (휘트니스센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세면기, 양변기, 싱크수전)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 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지열시스템	적용	총용량 170KW 에너지원 사용 위치 - 관리사무소 냉난방 열원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김해 진영2지구 B-1블럭 중흥 S-클래스
건축주	㈜청원개발
준공(예정)일	2019년 05월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3번지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29층 / 1,521세대
연면적	256,140.1362 m 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자	㈜아카데미엔지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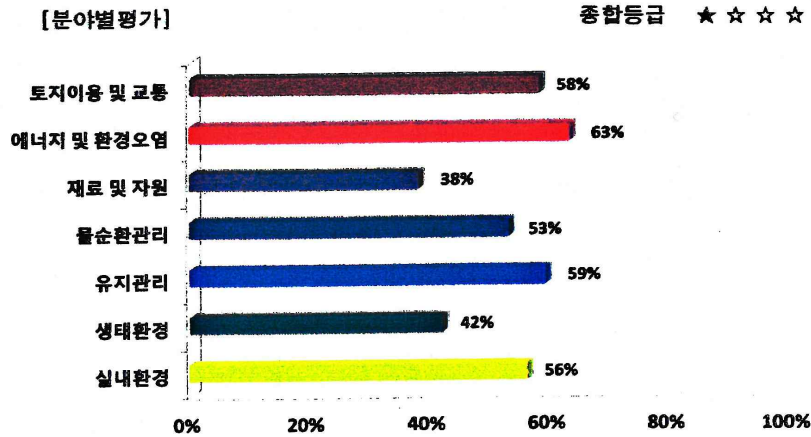
[인증 개요]

인증번호	제2016 - 602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16.05.10.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6년 05월 1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김해 진영2지구 B-1블럭 중흥 S-클래스
2. 신청자 : ㈜청원개발
3.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3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차음성능	경계벽의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벽 재사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물 조성	해당없음
생태적가치	기준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해당없음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우수부하 절감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라.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 이용	★★★★
에너지절약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마.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
보행지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해당없음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 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바.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계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6년 05월 10일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등급		비 고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침입감지기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5	단지서버실	주방TV	
	6	폐쇄회로TV장비	일괄소등제어	
	7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도어록	
	8	조명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9	난방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10	현관방범 감지기		
	11	주동현관 통제기		
	12	원격검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선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 3,397,570,000 ≠	부가가치세 포함
전 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 711,607,000 ≠	
소 방	세영엔지니어링(주)	₩ 400,000,000 ≠	
통 신	(주)엔탑엔지니어링	₩ 4,4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 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종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75,677,818,195	
	기간이자	10,631,000,554	
	그 밖의 비용	6,865,962,251	
계		93,174,781,000	
공사비	토목	15,146,357,294	
	건축	104,447,806,661	
	기계설비	17,848,299,203	
	그 밖의 공종	44,379,122,126	
	그 밖의 공사비	21,093,444,431	
계		202,915,029,715	
간접비	설계비	1,495,881,600	
	감리비	4,573,577,000	
	부대비	93,806,528,000	
계		99,875,986,600	
그 밖의 비용		11,611,902,685	
합계		407,577,70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292,873,140,000 ≠	제05612016-101-00061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약관 제1조 제4호)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샴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청원개발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등록번호	227-87-00019
시공회사	상 호	중흥토건(주)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등록번호	416-81-13368

■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jy2-sclass.com/>**

■ **건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61-1번지 / 분양문의 055-345-95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